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시행 경과와 대응 방안 (기업결합 사전신고)

I. 들어가며

EU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이 2023년 7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FSR에 따른 기업들의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신고와 EU집행위의 직권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 역시 이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은 현재까지의 FSR 시행 경과를 돌아보고,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이 FSR 신고·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Legal Update를 통해 FSR 및 그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441, 이하 'FSR 이행규정')에 따른 역외보조금 관련 사전신고 의무와 그 요건을 설명드린 것에 이어,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FSR 및 그 이행규정에 명시된 기업결합 사전신고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전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I. 기업결합 사전신고

1. 사전신고의 내용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는 당사자는 기업결합 정보, 기업정보, 매출규모, 재정적 기여, 역내시장 영향, 긍정적 효과, 선언문,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FSR 이행규정 Annex I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ection	내용
Section 1	기업결합 요약(필수) V 기업결합 당사자, 취득 절차(경쟁절차를 통한 선발인지 여부), 기업결합의 성격(합병, 단독/공동 지배권 취득, 합작투자법인 설립), 기업결합의 전략 및 경제적 근거, 기업결합 당사자의 활동 등을 특정하여 기재한 기업결합의 요약설명 ¹⁾

1) FSR 이행규정 Annex I Section 1.1.

Section	내용
Section 2	<p>당사자에 대한 정보(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당사자의 기업명, 기업결합에서의 역할, 연락담당자 등 정보²⁾ ✓ 기업결합 당사자가 수행하는 각 사업의 성격에 대한 설명³⁾
Section 3	<p>기업결합, 소유권, 지배권에 대한 상세정보(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기업결합이 FSR상 어떤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기업결합의 실행 방식(예: 계약 체결, 공개 매수 개시 등), 일정 등⁴⁾ ✓ 기업결합의 경제적 근거, 거래의 가치, 거래 대금의 자원, 지난 3년간 FSR 또는 EC (Council Regulation)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기업결합의 관련 기업 간의 지배권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 등
Section 4	<p>신고기준(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R 제2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EU 역내 총 매출액 정보⁵⁾ ✓ 3년 간 역외국으로부터 받은 총 재정적 기여가 5천만 유로 이상인지 여부
Section 5	<p>역외 재정적 기여 정보(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당사자 또는 피인수기업이 3년 이내에 각 100만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적 기여로서, FSR 제5(1)항의 제(a)호 내지 제(d)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3년 이내에 받은 각 100만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적 기여로서, FSR 제5(1)항의 제(a)호 내지 제(d)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여의 경우, 재정적 기여의 종류와 액수, 목적, 사용조건 재정적 기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정부 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상세 정보⁶⁾ ✓ 그 외의 재정적 기여의 경우(FSR 제5(1)항의 제(a)호 내지 제(d)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정적 기여의 종류별 분류와 각 종류별 재정적 기여 수여의 근거나 이유 및 수여 기관에 관한 간략한 설명
Section 7	<p>보조금의 긍정적 영향(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과 관련된 경제적 활동이 역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의 목록과 근거, EU의 정책적 목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내용과 근거⁷⁾

2) FSR 이행규정 Annex I Section 2.1.

3) FSR 이행규정 Annex I Section 2.2.

4) FSR 이행규정 Annex I Section 3.1.

5) FSR 이행규정 Annex I Section 4.1.

6) FSR 이행규정 Annex I Section 5.2.

7) FSR 이행규정 Annex I Section 7.

Section	내용
Section 8	<p>증빙서류 및 목록(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한 요약표(summary table) ✓ 다음의 첨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R 제5(1)조 제(a)호 내지 제(d)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여의 경우, Section 5.1에 따른 재정적 기여와 관련된 증빙서류 사본 - 이사회 또는 이사, 감사회 등이 작성하거나 수령한 기업결합 및 그 근거와 관련된 분석·보고서·연구·조사·프레젠테이션·비교자료 등 문서의 사본, 외부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자문의 요약, 결론 또는 보고서 - 기업결합 당사자의 가장 최근의 연차 결산보고서 및 연례 보고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만약 인터넷 주소가 없다면 사본Section 4에서 '과도하게 불이익한 입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참고자료
Section 9	<p>사전신고 불요 선언문(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선언이 포함된 선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he notifying party or parties confirm that, to the best of their knowledge and belief, the information given in this notification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that true and complete copies of documents required by the Form FS-CO have been supplied, that all estimates are identified as such and are their best estimates of the underlying facts, and that all the opinions expressed are sincere.</i> - <i>They are awar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of Regulation (EU) 2022/2560 concerning fines and periodic penalty payments.</i>

2. 역내시장 왜곡 가능성과 사전신고의 예외

FSR은 '역내시장 왜곡 가능성이 큰 재정적 기여'를 규정하고, 해당 재정적 기여와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와 설명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재정적 기여의 역내 왜곡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 성격, 조건 및 기업의 상황과 경제활동 수준 등을 고려하는데, 재정적 기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역내 왜곡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됩니다.

- ✓ 파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 ✓ 부채·채무에 대한 무제한 보증 형태의 보조금
- ✓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금융조치
- ✓ 기업이 부당하게 유리한 입찰을 제출할 수 있게 하여 해당 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다만 사전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령한 역외 보조금 총액이 4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역외 보조금은 역내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왜곡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타 재정적 기여에 대한 신고는 FSR 이행규정 Annex I Table1의 신고표를 활용하여 역외국별,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그룹별 기여액 합산액 및 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표에는 3년 이내 총 재정적 기여의 합산이 450만 유로 이상인 국가만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지난 번 Legal Update에서 신고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합병기업, 합작투자법인 및 그 참여기업이 역외국들로부터 받은 모든 재정적 기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준을 충족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나, 공개 입찰공고 또는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이전 3년간 역외국으로부터 받은 개별 재정적 기여(individual amount)가 100만 유로 미만인 재정적 기여는 재정적 기여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 100만 유로는 개별 기업이 하나의 국가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기업이 여러 국가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 또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국가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세금, 사회보장기여금의 납부 연기, 조세사면,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감면 등 역시 재정적 기여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한편, EU집행위는 재정적 기여가 부여된 시점을 재정적 기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재정적 기여를 받을 권리가 수여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

3. 사전신고의 방법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은 계약 체결, 공개입찰 공고 또는 지배지분 취득 이후, 해당 기업결합 이행 전에 사전신고하여야 합니다.⁸⁾

기업결합이 FSR 제20조 제1항 (a)호의 합병 또는 (b)호의 공동 지배권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의 당사자들 또는 공동 지배권을 취득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⁹⁾

사전신고는 EU 집행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신고 접수 및 관련 문의사항은 EU 집행위 경제총국(DG COMP)가 담당합니다. 경쟁총국 이메일인 comp-fsr-registry@ec.europa.eu에 문의하여 해당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안내 받으면, 신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사전신고서 및 선언서는 유럽연합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하나, 신고자의 명칭은 원어(original language)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증빙서류는 원어(original language)로 제출하되 유럽연합의 공식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절차 중의 언어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FSR Article 21(1)

9) FSR Article 21(3)

한편, 신고자가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신고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게 동 정보의 제출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해 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 및 동 정보의 최적 추정값을 제시해야 하고, 집행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출처가 있다면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출 면제 요청은 사전신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신고서에 해당 요청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 권고됩니다.

사업자의 기밀자료의 경우, 동 자료가 어떤 이유에서 기밀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한 후 각 페이지에 해당 자료가 비밀정보(CONFIDENTIAL)에 해당하는 자료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암호화된 파일로 제출한 후 비밀번호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II. 결론

기업이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무사히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전신고 전 재정적 기여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완성도 있는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FSR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필수 정보와 자료를 누락없이 취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FSR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울촌은 역외보조금 및 국제통상규제에 관한 여러 해외 정책들에 대하여 폭넓은 대응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신 정보와 필요한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U 역외보조금 규정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eas

[국제통상](#)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국제거래](#)
[수입규제](#)

Contact

백운재 변호사

02-528-5473

yjbaek@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02-528-5306

jhahn@yulchon.com

박소영 변호사

02-528-5670

soyoung@yulchon.com

최호연 변호사

02-528-6402

hoyeanchoi@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